

보도시점 2023. 9. 20.(수) 조간 2023. 9. 19.(화) 12:00 배포 2023. 9. 19.(화) 08:00

추석연휴에도 빈틈없는 노안이동노숙인 보호 추진

- 노인학대 신고 전화 1577-1389, 노인학대 신고앱 24시간 운영
-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를 위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정상 운영
- 추석명절 연휴기간 결식아동에 대한 원활한 급식 지원책 마련
- 추석명절 노숙인 무료급식 확대, 진료 가능 기관 안내 및 현장상담반 운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추석연휴(9.28~10.3) 기간에도 학대피해노인과 결식아동의 긴급보호 등을 위하여 ▲노인학대 신고체계(신고전화 1577-1389)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등을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 3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평소와 동일하게 365일 24시간 신고 전화 (1577-1389) 및 노인학대 신고앱을 통해서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학대피해노인 보호서비스를 지원한다.

나비새김(노인지킴이)앱은 언제 어디서나 노인학대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사진·동영상·음성녹취를 첨부하여 증거를 전송할 수 있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학대행위자와의 분리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숙식, 상담, 법률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최대 6개월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결식아동 급식 제공자의 고향 방문 등으로 인한 급식소 휴무에 대비하여 연휴기간 정상 운영하는 급식소·음식점 및 식품권·도시락·자원봉사 활용 등 대체급식 수단을 마련하고, 해당 아동 및 보호자에게 식당 목록 및 이용 방법을 사전에 안내하여 빈틈없는 급식을 지원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추석 명절기간 거리 노숙인이 급식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거리노숙인 밀집지역의 민간급식단체와 연계하여 실내무료급식 지원을 확대한다.

추석 명절에 진료 가능 기관(보건소, 의료기관)에 대해 안내하고, 노숙인 무료진료소, 아웃리치팀(현장상담반)을 명절 기간 운영하여 환자 발생에 따른 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석연휴에도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주변에 노인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노인학대 신고전화(1577-1389) 또는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앱을 통해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지역 실정에 맞게 사전에 수립된 아동급식 지원계획에 따라 연휴 기간에도 결식 아동들이 원활한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협조를 당부하였다.

한편, 2024년 학대피해노인보호관련 예산은 노인학대예방 및 홍보, 학대 피해노인 일시보호서비스 수행 등을 위해 12,354백만원이 반영되었다. 이는 2023년보다 435백만원 증액된 수치이다. 이를 통해 은폐되기 쉬운 노인학대의 신속한 발견 및 피해노인 보호조치가 활발히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노인학대의 정의 · 유형 및 신고처리절차

- 2.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 3. 아동급식 지원사업 개요
- 4. 노숙인 및 노숙인시설 현황

담당 부서	인구정책실	책임자	과 장	이윤신 (044-202-3465)
	노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종한 (044-202-3452)
	인구정책실	책임자	과 장	임아람 (044-202-3430)
	아동권리과	담당자	사무관	박희정 (044-202-3433)
	사회복지정책실	책임자	과 장	김영아 (044-202-3070)
	자립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정재은 (044-202-3074)





붙임 1 노인학대의 정의유형 및 신고처리절차

□ 노인학대 정의

○ (노인복지법 제1조의2)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

□ 노인학대의 세부 유형 및 신고방법

○ (노인학대 세부 유형)

유형	유형별 세부내용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모욕·위협 등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성추행,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 앗아가는 행위로 경제적 착취,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 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학대 신고 방법)** 신고전화(1577-1389^{*}, 112), 신고앱(나비새김^{**}) 활용(붙임2)
 - * 휴대전화 위치기반으로 해당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접수됨
 - ** 사진·음성·동영상 증거 첨부가능, 신고자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 비밀보장 가능

□ 노인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설치 방법

노인학대 신고 모바일 앱(App) "나비새김(노인지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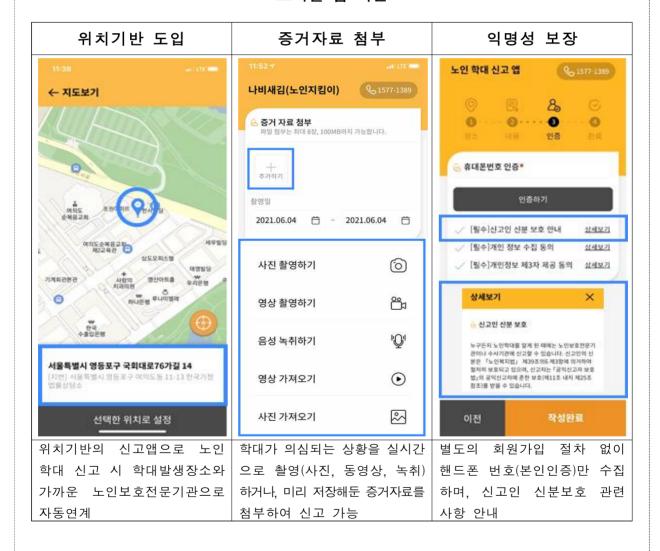
365일 24시간 운영

<신고앱 다운로드>

(삼성,LG/안드로이드): Play 스토어에서 "노인학대" 검색 후 다운로드

(아이폰/IOS): App Store에서 "노인학대" 검색 후 다운로드

<모바일 앱 화면>



붙임 2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현황

□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현황

구 분	주 소	연 락 처
중앙(서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가길 14, 4층	02)3667-1389
서울특별시남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124, 4층	02)3472-1389
서울특별시북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 69 대성빌딩 2층	02)921-1389
서울특별시서부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말로 10길 30-1 5층	02)3157-6389
서울특별시동부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703, 3층 301호 (천호동, 삼화빌딩)	02)470-1389
부산광역시동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88 연합뉴스빌딩 5층	051)468-8850
부산광역시서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8번길 46, 제이에스빌 5층	051)867-9119
대구광역시남부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 41, 2층	053)472-1389
대구광역시북부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 284	053)357-1389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인천시사회복지관 204호	032)426-8792~4
인천광역시서부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165번안길 12, 2층	032)569-0533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길 7, 체육관 1층	062)655-4155~7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170번길 103, 1층	042)472-1389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로121, 3층	052)265-1380,1389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01번길 1, 노인회관 4층	031)268-1389
경기동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1, 505호	031)736-1389
경기북부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104, 5층	031)821-1461
경기서부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501 양촌빌딩 4층	032)683-1389
경기북서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559, 4층	031)978-1389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110번지 2층	033)253-1389
강원특별자치도동부	강원도 강릉시 율곡로 2954, 3층	033)655-1389
강원특별자치도남부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170 새한빌딩 2층	033)744-1389
충청북도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438번길 39—17 3층	043)259-8120~2
충청북도북부	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76	043)846-1380~2
충청남도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 206번길 42	041)534-1389
충청남도남부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9 2층	041)734-1389,1398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57-23	063)273-1389
전북서부	전라북도 김제시 하동 1길 79	063)542-1389
전라남도동부	전남 순천시 저전길 84	061)753-1389
전라남도서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5길 전라남도 노인회관 4층	061)281-2391
경상북도동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흥로 411 기쁨의복지관 B102	054)248-1389
경상북도북부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24-21(본사무소)	054)655-1389
경상북도서부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아포대로 981-8	054)436-1389~90
경상북도남부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18, 3층	054)716-1389
경상남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북4길 15 (금강노인종합복지관, C동1층)	055)222-1389
경상남도서부권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1098 2층	055)754-138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7길 3	064)757-3400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 29 서귀포시노인복지지원센터 2층	064)763-1999

붙임 3

아동급식 지원사업 개요

- □ (추진근거) 「아동복지법」 제35조 제2항 및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36조에서 국가와 지자체에 결식예방 및 영양 개선사항 지원 의무 부과
 - '05년 지방이양에 따라 지원기준·방법·절차 등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
 - * 보건복지부는 「결식아동 급식업무 표준 매뉴얼」을 통해 급식단가 등 권고
- □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등의 아동,
 ▲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총 284천 명 (2022년)
 - * 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등 추천에 따라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 결정

< 급식대상자 현황(단위 : 명) >

연도	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22년	283,858	165,698(58.4%)	15,328(5.4%)	140,180 (42.5%)
'21년	302,231	173,008(57.2%)	17,224(5.7%)	121,566 (39.4%)
'20년	308,440	166,198(53.9%)	20,676(6.7%)	111,999 (37.1%)

- * 한부모, 긴급복지, 중위소득 52% 이하, 지역아동센터·복지관 이용 등
- □ (지원내용) 2023년 기준 1식 8,000원 이상 지원 권고
- □ (시행주체) 교육청과 지자체 재원 분담·지원

		방학 중				
구 분	평	일	토ㆍ경	ਰ੫ ਨ		
	조・석식	중식	조・석식	중식*	조ㆍ중ㆍ석식	
기관명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 * 학기 중 주말·공휴일 중식은 지자체에서 교육청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
- ** 지자체마다 지원방법 등은 상이, 평균 1일 1~2식 제공
- 【전달체계】 개인 신청, 지역사회 발굴・추천(읍·면·동, 시·군·구 등) → 대상자접수・자격기준 조회 및 결정(시·군·구) → 지원방법에 따라 급식 전달

붙임 4 노숙인 및 노숙인시설 현황

□ 연도별 노숙인 현황

(단위 : 명)

연도	′18	′19	′20	′21.5월	′22	전년 대비	
합계	10,801	10,875	9,470	8,956	8,469	△487	
 자활	1,684	1,523	1,209	1,107	1,078	△29	
일시보호	1,047	1,173	555	394	554	160	
거리	895	1,246	1,241	1,201	1,040	△161	
재활·요양	7,175	6,933	6,465	6,254	5,797	△457	
쪽방주민	5,705	5,641	5,396	5,448	4,775	△673	

^{*(}기준) 2021년도는 노숙인 등 실태조사 결과, 기타 연도는 행정조사(연말기준) 자료

□ **시·도별 노숙인 현황** ('22.12월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합계	ᄹ	부산	따	인천	광주	대전	윘	ᄹ	경기	강원	쁑	춞	전북	전남	걩	겲남	제주
합계	8,469	2937	618	739	537	103	255	34	78	700	210	554	47	247	598	287	393	132
자활	1,078	592	39	61	17	19	81	25	-	142	19	12	23	46	-	2	-	-
일시보호	554	447	8	10	4	1	21	-	-	22	11	-	-	8	8	-	6	8
거리	1,040	455	99	110	98	21	40	9	1	121	9	8	24	25	3	1	14	2
쨰함요양	5,797	1,443	472	558	418	62	113	-	77	415	171	534	-	168	587	284	373	122
~ 행구민	4,775	2,445	916	624	394	-	396	-	-	-	-	-	-	-	ı	ı	-	-